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강원특별자치도 장학금 지원 사업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4년 3월 15일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규정 제191호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강원특별자치도 장학금 지원 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장학금 지원 사업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학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장학생”이라 함은 장학금 지원사업의 선발 절차에 따라 선발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나 기업(또는 단체)의 지정기탁사업 등 기타 인평원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장학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장학생 선발인원과 장학금 지급시기, 횟수,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범위 및 후원금을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선발대상 자격기준) 선발공고일 현재 신청인 본인이 강원자치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단,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학사업은 예외로 한다.

1. 강원자치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이에 상응하는 검정고시 합격자)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자
2.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북이탈주민 및 제3국에서 태어난 북이탈주민의 자녀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학교 밖 청소년 및 「청소년 복지지원법」에서 정의하는 가정 밖 청소년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의하는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장학생” 을 “장학생” 으로, “회의운영 등” 을 “회의 운영과 장학생 선발에 대한 세부 기준” 으로 한다.

1. 등록금장학금, 학자금대출 이차지원 등 업무협약에 따라 대상자 및 금액을 검증할 수 있는 경우
2. 특성화인재 장학금, 자치단체장 추천 장학금 등 인평원 선발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명확하게 확정된 경우

제8조제3항 중 “따로 정할 수 있다” 를 “정한다” 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선발통지)” 를 “(선발공지)”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본인(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장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를 “홈페이지” 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자에” 를 “사람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4항) 전단 중 “본인(보호자)” 을 “본인, 보호자” 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위해 학업장려 장학금 및 포상 성격의 장학금” 를 “위해 장학금”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등록금이 고지된 금액 범위에서 타 장학금(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등)을 합친 총금액” 을 “등록금 고지 금액에서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등 타 장학금을 합한 금액”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원장이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를 “규칙으로 정한다” 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원장이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를 “규칙으로 정한다” 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원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보호자”라 함은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p> <p>2. “대학생 장학금”라 함은 도내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사업 중 등록금, 주거비, 생활비 지원 사업을 통틀어 말한다.</p> <p>3. “학생”이라 함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초·고·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자를 말한다.</p> <p>4. (생략)</p> <p><신설></p> <p>제3조(사업) ① 인평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미래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도내 인재</p>	<p>제2조(정의) ----- -----.</p> <p>1.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p> <p>2.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p> <p>3. “학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p> <p>4. (현행과 같음)</p> <p>5 “장학생”이라 함은 장학금 지원사업의 선발 절차에 따라 선발된 자를 말한다.</p> <p>제3조(사업) ① ----- ----- -----</p>

를 발굴하여 육성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소외계층의 학업증진을 위해 고른 기회와 혜택을 주고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 5. (생략)

6. 지자체, 공공기관의 인재육성 위탁사업 또는 개인이나 기업(또는 단체)의 지정 기탁 사업

7. 기타 인평원의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업

<신설>

② 매년 장학금 사업계획을 이사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제4조(선발인원 및 지급규모) ① 장학금의 선발인원과 장학금 지급액은 도 출연금 및 인평원 적립기금 이자 수익, 후원금 등 매년 예산범위를 감안하여 원장이 정한다.

② (생략)

-----.

1. ~ 5.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나 기업(또는 단체)의 지정기탁사업 등 기타 인평원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장학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③ -----
-----, -----각호-----
-----.

1. ~ 6. (현행과 같음)

제4조(선발인원 및 지급규모) ① 장학생 선발인원과 장학금 지급시기, 횟수,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범위 및 후원금을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선발대상 자격기준) ① 장학금
선발대상은 선발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강원자치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학생 장학금 지원의 경우 강원
자치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
법」 제2조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이에 상응하는 검정고시 합격자)
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
당하는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자
2. 원장이 따로 정한 기준소득 이하
가구의 저소득층 학생
3.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4.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기
여 및 봉사활동에 참여 의지가 있는
학생
5.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한 학생

제5조(선발대상 자격기준) 선발공고일
현재 신청인 본인이 강원자치도에 1
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다
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
다. 단,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학
사업은 예외로 한다.

1. 강원자치도에 소재하는 「초·중등
교육법」 제2조 제3호 내지 제5호
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졸업(또
는 이에 상응하는 검정고시 합격
자)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자
2.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북
이탈주민 및 제3국에서 태어난 북
이탈주민의 자녀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
률」에서 정의하는 학교 밖 청소
년 및 「청소년 복지지원법」에서
정의하는 가정 밖 청소년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서 정의하는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

6.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4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청소년

②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개인, 기업, 타기관에서 따로 대상자를 정하여 기부한 경우 또는 인평원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라고 판단되어 이사회에서 의결된 대상자

③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제2항의 대한 구체적인 선정 세부 기준은 원장이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선발방법) ① 인평원은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장학생 선발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심의 확정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인 경우
2. 천재지변·상해·가정형편 및 기타 등으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의 학생에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장학금 지급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의 객관적 점수 환산이 가능한 경우

제6조(선발방법) ① -----

-----.

1. 등록금장학금,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등 업무협약에 따라 대상자 및 금액을 검증할 수 있는 경우
2. 특성화인재 장학금, 자치단체장 추천 장학금 등 인평원 선발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명확하게 확정된 경우

<삭 제>

② 제1항의 장학생 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회의운영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신청접수) ①·② (생략)

③ 신청접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원장이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선발통지) 장학생 선발이 확정되면 그 사실을 본인(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장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금 지급) ①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장학증서 수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급시기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장학금 지급 기간과 금액은 인평원 사업계획에 따른다.

④ 장학금은 장학생 본인(보호자) 계좌 또는 학교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학업장려 장학금 및 포상 성격의 장

② 장학생 -----, 회의 운영과 장학생 선발에 대한 세부 기준-----.

제8조(신청접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선발공지) -----
----- 홈페이지 -----

-----.

제10조(장학금 지급) ① -----
----- 사람에 -----

-----.

<삭 제>

<삭 제>

② ----- 본인, 보호자 -----

----- 위해 -----

학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중복지원 방지) ① 등록금 장학금의 경우 등록금이 고지된 금액 범위에서 타 장학금(국가장학금, 교내 장학금 등)을 합친 총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등록금 장학금 이외의 장학금은 사업 특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중복지원 가능여부를 정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원장이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2조(지급 중단 및 반환) ① (생략)

② 장학사업별 지급 중단 및 반환에 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3조(장학생 관리 등) ①·② (생략)

③ 인평원 인재육성 사업에 선발된 장학생들에 대해 장학금 지급 기간 동안 별도의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원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11조(중복지원 방지) ① -----
----- 등록금 고지 금액에서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등 타 장학금을 합한 금액-----
-----.

② -----

----- 규칙으로-----
-----.

제12조(지급 중단 및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
----- 규칙으로-----
-----.

제13조(장학생 관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규칙으로-----
-----.

<삭 제>